

1. 개정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<2022. 12. 21.>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4조)

: 2023년 경제정책방향 <2022. 12. 21.> 추가

나.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(안 제 6조)

: (대상)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

(기간) 2023년 1월 1일 ~ 2023년 4월 30일 (4개월 연장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2023년 경제정책방향 회의('22.12.21.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제나목 중“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>”을 “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.>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 <2022. 12. 21.>”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4조(정의)	-----	
1. “유가보조금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.		1.	-----	
가. (생략)		가.	(현행과 같음)	
나. 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 및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> 결과에 따라 경유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“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”		나.	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>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<2022. 12. 21.>-	
2. ~ 13. (생략)		2. ~ 13.	(현행과 같음)	